



수 영 구



수신 (주)세왕에너지 귀사
(경유)

제목 건축허가(개축) 알림(민락동 167-30)

귀사에서 제출하신 우리구 민락동 167-30번지상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허가조건 및 건축법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개축)허가 개요

허가번호	위 치	건축주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용 도	층수/동수	구조	비고
2015-건축과-개축허가-1호	민락동 167-30	(주)세왕에너지	734.1	149.5	170.5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지상2층 /2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 구조	준주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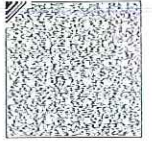
2. 공과금 등

가. 면허세 : 40,500원(건축허가)

나. 국민주택채권 : 220,000원

다. 원인자부담금 관련 오수발생량 : 0.48m³/일 증가

- 붙임 1. 건축허가서 1부(별첨)
2. 건축허가 조건 1부. 끝.



수영구청장



주무관 전결 2015. 8. 7.
박미현

협조자

시행 건축과-30093 (2015. 8. 7.) 접수

우 48305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남천동, 수영구청) / <http://www.suyeong.go.kr>

전화번호 051-610-4594 팩스번호 051-610-4589 / nagi98@korea.kr / 비공개(6)

"가장 살기 좋은 수영구"

건축주(시공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허가번호 : 2015-건축과-개축허가-1호
- 대지위치 : 수영구 민락동 167-30번지
- 건축주 : (주)세왕에너지

- 귀하께서 우리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신 것을 환영하오며, 건축공사와 관련된 법령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건축허가서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구히 보관하여 활용하시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건전한 건축문화정착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부사항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건축공사 시 지역내 건설업체(도급 및 하도급, 전문건설업 등)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산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 등 **지역생산건설자재(www.bcldb.kr) 건설장비 및 인력, 건축설계사무소 등을 이용(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건축사사무소 및 전문건설업 현황 게시 : [수영구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경제정보

【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교통행정과) 】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 별표7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건축물 신축 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주차장 사용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승인 협의 요청 시 사용검사를 득하고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설비 설치 관련 (건설과) 】

1. 우·오수는 대지 내 기존 우수관 연결
2. 대지 내 진출입을 위해 도로(보도)정비 필요시 사전협의(정비계획 등)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배수설비는 우·오수관을 분리하여 매설하고 부지 내 우수 및 옥상 우수는 도로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우수받이에 연결하여 공공하수도로 접속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최종 집수정에는 기름망(스크린), 침전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진출입구 측구는 턱 낮추기(배수 턱 높이 2cm이상유지) 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은 맨홀 또는 측구 뚜껑부에 연결시켜야 하며, 복개부에 연결 또는, 집수정이 없을 시에는 측구 뚜껑부 또는 집수정을 신설하여야 함. 또한, 규격에 맞게 코아천공기로 구멍을 뚫어 연결하고 유입관은 공공하수도로부터 역류하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벽면의 위쪽 부분에 연결시키며, 벽면에 맞추어 절단 후 몰탈로 마감 처리하여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도로 굴착 시에는 필히 도로관리청(수영구 건설과)의 도로굴착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 굴착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됨. 또한, 도로굴착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매분기마다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도로를 횡단하여 매설되는 하수관은 도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관종 및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시 매설되는 관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 바랍니다.(공사 전·중·후 사진)
8. 배수설비 시공 시 각종 오물이 하수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유입시에는 즉시 공공하수도를 청소(준설)하여야 합니다.
9. 배수설비를 타인소유 부지에 매설코자 할 경우는 착공 전 인근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시공토록하고, 건축 착공시 관련면허 사본(계약서 사본 포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준공검사 신청시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복구전경과 배수설비 및 공공하수도 연결 부분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 시 제출한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준공 후 유지관리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12. 오수 발생량이 10m³ 이상일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입니다.
13. 기타 사항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배수설비설치지침』 등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 절수설비 관련 (환경위생과) 】

1. 수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계획은 적합하여 동법에 의거 설치토록 조치하고 사용승인 시 환경표지인증서(또는 절수 관련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및 시공사진 첨부하여 협의 바랍니다.
2. 건축공사 시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할 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특정공사사전신고를 득한 후 공사 실시토록 조치바랍니다.
3. 지하수법제9조의4의 규정에 의거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를 위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할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및 관련고시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 및 변경될 경우 신고(변경) 이행하여야 합니다.

【 주유소 설치기준 관련 (지역정보과) 】

1. 석유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등록시설(저장시설 용량, 주유기 대수, 부지 등)이 변경되거나 주유소 영업이 중단될 경우 변경된 날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과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유소 공중화장실은 면적 13.2m² 이상, 세면기·대변기 남녀 각 1기 이상, 소변기 1기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 지적정리 관련 (토지정보과) 】

1.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 및 건물번호를 교부받은 후 주출입구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시설 관련 (청소행정과) 】

1. 오수발생량 : 0.48m³/일 증가
2.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한 설계도와 동일하게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만일 시공능력이 없는 자가 시공하거나 사전 변경신고 없이 다르게 시공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대상 : 정화조 처리용량 · 구조 변경, 본체교체
3. 정화조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신청시 재질검사성적서(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자가 정화조를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할 경우), 현장사진(콘크리트기초, 보호벽 및 배관 등 설치)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기준(하수도법시행령 별표1)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 통지(부적합 통지를 받을 경우 시설 개선 후 준공검사를 재신청해야 함)를 받게 되며, 만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품은 준공검사 시 담당공무원이 제조업체 및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기준에 의한 표기사항이 몸체 내 ·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6. 정화조 준공검사를 받은 후라도 제품불량이나 주변의 하중 등으로 인한 정화조 파손(오수 누설) 등이 발생될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 대한 개선명령과 시공자의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밀집지역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발생가스는 건물옥상에서 배출(환기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냄새로 인한 주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점용 관련 (도시관리과과) 】

1. 상기 지역에 신축공사시 일시점용(비계 설치, 공사자재 적재, 레미콘타설) 등을 위한 도로(일시)점용 필요시 우리구(도시관리과)에 점용이 있기 **3일 전까지 점용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1. 가설울타리, 분진망, 낙하물 방지막 등은 공사완료시까지 견고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시어 간선도로변 공사현장의 안전 및 미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기초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승인신청 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중 제2면 종합의견 란에 도시기초시설물 복구 확인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구에서는 연면적 200㎡이상 신축허가대상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에 한해 자전거 보관소 및 공기주입펌프 설치토록 하고 있으니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전까지 설치(사용승인 신청시 설치사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는 주요 관계법령 **【붙임】** 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 등 조건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 건축허가시 제출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계획대로 설치하고 사용승인신청 시 설치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장사항 】

1. 옥상바닥은 짙은 녹색으로 마감(조경, 인조잔디 식재 포함)할 것을 권장하오니 옥상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단내에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조경수목 식재하시고, 건축조례에 정한 법적 조경기준 보다 많은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하층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피해발생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공전 안전진단전문업체에 의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굴토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보험(하도급시 전문건설협회 공제) 가입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와 관련 주요법령 안내

《 공사착공 전 이행사항 관련 》

1. 공사착공 전에 착공신고서를 우리구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질조사 및 대지경계측량을 선행하여 기초형식 및 대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철거예정일 7일전에 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 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우리구 청소행정과(☎610-4437)에 신고(신고 미이행시 폐기물관리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3. 건축공사(인·허가 및 신고, 철거·멸실 포함)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전[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 변경의 경우 변경전(사업장명칭, 공사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의 경우 변경전까지 사전신고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건축주(시공사)가 신고를 하지 않아 상기 개별법령에 의한 과태료처분(신고미이행 ▶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 ▶ 60만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특정공사사전신고포함)를 필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정온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이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억제,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① 향타기·향발기 또는 향타향발기(압입식 향타향발기는 제외한다) ② 천공기 ③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브레이크(휴대용을 포함한다) ⑤ 굴삭기 ⑥ 발전기 ⑦ 로더 ⑧ 압쇄기 ⑨ 다짐기계 ⑩ 콘크리트절단 ⑪ 콘크리트 펌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4. 건축공사 착공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 지하 굴토 깊이 10m, 높이 31m,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를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장의 안전성을 사전에 심사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시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5.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에 착공신고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
6. 건축물 공사에 있어 일시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점용허가(우리구 도시관리과 ☎665-4712)를 득하여 도로점용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40조]

《 공사시공 및 공사장 관리 관련 》

7.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연면적 660㎡)등 수립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신청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 품질검사전문기관인 우리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건설시험실)에서도 품질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1, 2종 시설물, 지하10m이상 굴착)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9. 건축공사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측구, 보도블록, 하수구 등)을 훼손하거나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여서는 안되며 공공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에는 반드시 소정의 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 완공시까지 복구완료하여야 합니다.

10. 전기공작물(고압선 등)에 근접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한전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0조]

11. 건축공사장에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의한 대지안전조치 및 가설울타리, 안전보호막, 낙하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인근 토지·건물의 피해 및 주민통행·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지하굴착 시 어스양카로 시공하는 경우로서 도로(지하)부분인 경우 시공 전에 도로 관리부서에 별도 협의(승인)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고 인접대지(지하)를 침범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13. 신축건물의 굴착공사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부산도시가스사(☎607-1403)와 가스배관 유무조회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실시 및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

14.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15. 건축주·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시고, 설계변경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으신 후 시공하여야 하며, 상주감리원 변경 또는 철수가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

16.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건축주)은 소방공사감리자를 소방시설 착공신고 하시는 날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사법 제13조 및 제17조]

17. 건축공사장의 출입구 부근이나 전면도로의 가설펜스 벽면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건축개요, 건축관계자 성명, 현장책임자(소장)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및 공사현장내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제24조 제2항 및 제5항, 시행규칙 제18조]

18.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 전까지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수질)환경보존법제10조]
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9조]
20. 건축공사현장에서는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방문 기록 및 일지 등을 비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1. 건축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고발됨은 물론 전기·전화·수도 등의 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위반부분이 시정(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부과 됨을 알려드리오니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사용승인 전 이행사항 관련 》

22.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은 감리자로부터 공정별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받아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23. 건축선 지정부분은 사용승인 전에 자동차 또는 공중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등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46조, 제47조]
24. 모든 건축물의 입주 및 사용은 사용승인 후 입주·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25. 기계식주차기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필증을, 승강기에 대하여는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을 사용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제19조의9,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26.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물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은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27. 정보통신공사법령에 의거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우리구 총무과에서 검사

필증 발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제대상 : 연면적 150m²이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28. 건축허가신청대지의 지적이동사항(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 시 지적이동신청서 및 측량성과도(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지적법 제31조]
29. 우수정화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보일러설치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
31.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전기설비사용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63조]
32. 차량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보차도)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도로점용공사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 건물번호판 부착 안내 》

33. 『도로명주소법』 제16조 3항에 의거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가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우리구 토지정보과에서 건물번호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물번호를 부여 받으시고 건물의 주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착 사진을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판 부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토지정보과(2610-4754~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법령 안내 》

34.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에 의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공사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이므로(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착공신고서나

사용승인신청서 등의 제출시에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성립통지서” 또는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고용·산재보험 E-mail 접수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 저수조 청소는 6월에 1회, 위생점검은 1개월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옥내 배관은 건설부고시 제1993-350호의 음용수에 사용 가능한 내식성 배관사용, 각종 급수용구는 수도법 제11조의2에 의거 절수형기자재 사용하여야 합니다.
36.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규모:10,000㎡)은 착공 후 90일 이내 우리시 (문화예술과)에 미술장식품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 완공 전까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37. 특정열사용기자재는 등록업자가 설치·시공 토록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사용승인신청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 제58조]
38. 바닥면적 3,000㎡이상, 2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광고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9. 갑종·을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40.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 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41. 사용승인 득한 건물에 광고물(간판등)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받아 지정장소에 설치하시되 가능한 모든 간판형식으로 하시고, 위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42. 사용승인시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친환경 건축설계 및 시공 사항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 설계 및 시공”을 권장하며, 친환경건축물 인증 세부심사기준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증기관 및 우리구(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기관 :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신청대상 :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주거부분, 비주거부분),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그 밖의 건축물

▷ 신청인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건축주가 동의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예비인정[사용승인(검사) 전], 본인증[사용승인(검사) 후]

※ 개별 법령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

▷ 신청서류 :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 자체평가서 및 증빙서류

■ 인증효과

- 유효기간 : 본인증(인증일로부터 5년간) 예비인증(사용승인 전)
 - 인증홍보 :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 가능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 포함하여야 함
 - 인센티브 : 인증등급 '우수'이상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15%경감
- ※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지방세법 제2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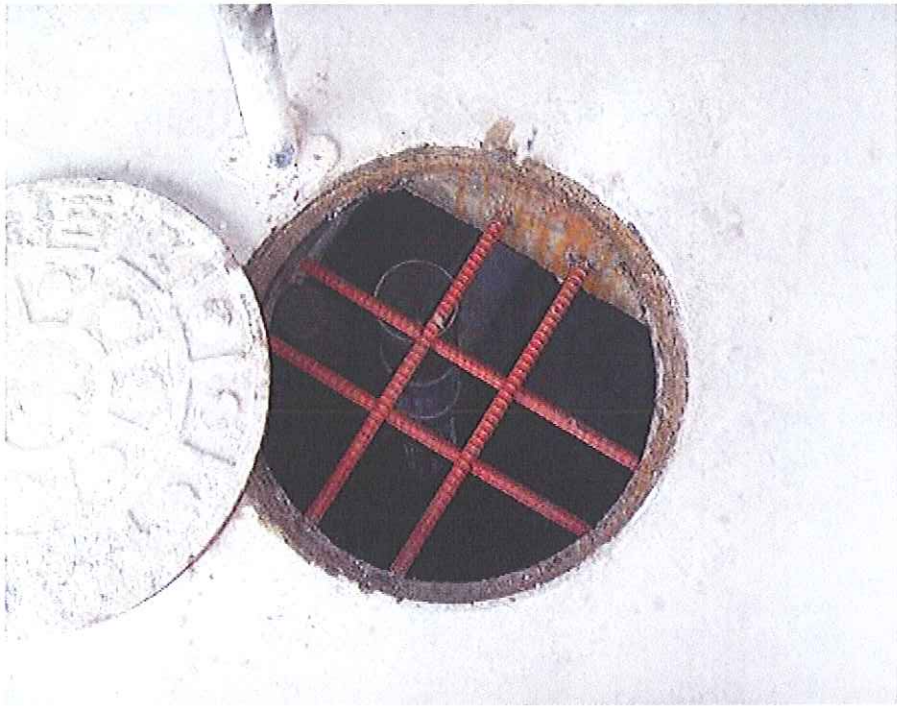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 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연수원 등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사례 사진



정화조 콘크리트 보호벽 조치



주물뚜껑 및 격자형 안전망 설치



송전선로 부근 **중장비 작업 시 한전에 연락하시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전이격거리 준수”

154,000볼트 : 5m 이상, 345,000볼트 : 8m 이상



[크레인에 의한 전력선 단선 고장]



[중장비 파손]

“무단굴착 금지”

도로굴착 및 천공작업 시 **한전에 사전 연락**

